

강화군의회 공고 제2019-17

제257회 강화군의회(임시회) 집회 철회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257회 강화군의회(임시회)를 철회 공고합니다.

- ◇ 철회내용 : 제257회 강화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- ◇ 철회사유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를 철회하고자 함.

2019년 9월 25일

강화군의회 의장 신 득

